

한국철도학회상규정

제 정: 2019.08.19.(이사회 승인)
최근개정일: 2026.02.09.(이사회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학회가 시행하는 “한국철도학회상(이하 학회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종류)

- ① 상의 종류는 특별상,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신진과학자상, 철도기술상, 기증상으로 구분한다.
- ② 위①항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별도의 학회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위①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기술상의 명칭은 당해연도 “철도기술상” 선정 및 시상 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결정과 회장의 승인에 따라 약간의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시상식은 학술대회 또는 총회에서 시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상별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상 및 공로상: 상패
- ② 학술상: 상패 및 상금(50만원 이하)
- ③ 논문상: 표창장 및 상금(30만원 이하)
- ④ 신진과학자상: 표창장 및 상금(30만원 이하)
- ⑤ 철도기술상: 상패
- ⑥ 기증상: 상장 또는 상패

제2장 특별상 및 공로상

제4조 (수상 자격)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상: 본 학회의 발전과 철도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업 및 단체
- ② 공로상: 본 학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5조 (위원회 구성) 수상자 선정을 위해 8인으로 구성된 학회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 위원은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논문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추천 자격) 특별상과 공로상의 추천자격은 학회 임원 3인을 포함한 권리회원 5명 이상의 추천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는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 선정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상자 선정 및 의결은 매년 8월 말일 이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학술상

제8조 (수상 자격) 수상자는 철도와 관련된 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권리회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수상자 선정을 위해 동 규정 제5조의 학회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추천 자격) 이 상의 추천 자격은 학회 임원 3인을 포함한 권리회원 5명 이상의 추천 또는 학술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는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자 선정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상자는 당해연도 추계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상

제12조 (수상 자격) 논문상 수상자는 직전년도에 우수 논문을 우리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권리회원으로 한다.

제13조 (논문상 심의위원회) 수상자 선정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된 논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해연도 논문집편집위원장, 위원은 논문집편집인 4인으로 한다.

제14조 (추천 자격) 이 상의 추천 자격은 학회 임원 2인을 포함한 권리회원 5명 이상의 추천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는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15조 (수상자 선정)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 후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상자 선정은 매년 8월 말일 이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신진과학자상

제16조 (수상 자격) 선정일 기준 만40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만 7년을 경과하지 않은 권리회원으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연구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회원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 구성) 수상자 선정을 위해 동 규정 제5조의 학회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추천 자격) 이 상의 추천 자격은 학회 임원 2인을 포함한 권리회원 5명 이상이 추천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는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19조 (수상자 선정)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 후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상자 선정은 매년 8월 말일 이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철도기술상

제20조 (수상 자격) 수상자는 철도 관련 우수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한 개인 또는 기관·기업·단체 등으로 한다.

제21조 (철도기술상선정위원회) 수상자 선정을 위해, 철도기술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 분야 부회장 중 회장이 정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전문가(이하 자문위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추천 자격) 이 상의 추천 자격은 철도 관련 우수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개인 또는 기관·기업(단체)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는 수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23조 (수상자 선정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도기술상 전시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수상자 선정 및 의결은 매년 8월 말일 이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증상

제24조 (정의) 이 상은 회원, 기관·기업(단체) 및 일반인 등이 서적, 현물 등 유무형 기증에 의한 상으로 한다.

제25조 (위원회 구성) 수상자 선정을 위해 동 규정 제5조의 학회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상의 명칭 및 시상 내역) 위원회는 기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의 명칭 및 시상 내역을 정한다.

제27조 (시상식) 시상식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수상자 선정 및 의결)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단, 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9조 (제출서류) 각 상별 수상자 또는 수상 후보자는 각 상별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각 상별 위원회에서 발굴 또는 각 상별 위원이 추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취소) 학회는 수상자가 연구윤리 위반, 학회의 명예 손상, 기술 및 제품 등의 결격사유 발견 또는 기타 이와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써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비공개)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는 의결로써, 각 위원장에게 회의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두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3조 (예산) 회장은 위원회 활동, 수상자 선정 및 시상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34조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9.8.19.)

제1조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2019.8.19) 후 기존의 한국철도학회상에 관련된 3개 규정(철도학회상수상규정, 철도학회상심사위원회규칙, 특별상설정에관한규정)은 2019년 8월 19일을 기하여 폐지한다.

제2조 (소급적용) 단, 본 규정 제정(2019.8.19.) 이전에 공지된 2019년도 한국철도학회상 및 저술상에 대한 내용은 유효하나, 수상자의 선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9.8.19.)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예외조치) 본 규정의 시행(2019.8.19.)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수상자의 선정은 2019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부칙 (2021.8.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3.1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개정 전에 사업공고가 있는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6.02.0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